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고단 56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폭행,모욕,강제추행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단5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모욕, 강제

추행

피고인 A

검사 허수진(기소), 곽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점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9,614)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8.18.13:30경 위 마사회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매표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미친년아, 꺼져. 내가 여기서 날린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네가 돈 버는 것 아니냐. 너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2. 9. 2. 16:10경 위 마사회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그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9. 9. 19: 00경 서울 종로구 G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마사회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네 여자친구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I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까지 따라오도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K고시원 창고에 들어가 흉기인 쇠 망치(총길이 약 34cm) 와 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7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위 쇠망치를 보여주며 "이 망치로 너를 죽일 수 있다 조심 해라"라고 말하고,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서 휘두르며 "내가 야비한 방법까지 써서라도 너를 죽일 것이니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H,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N, 0, P 작성의 각 진술서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1. 각 수사보고
-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과 쇠망치 사진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폭행죄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처벌불원의사표 시를 철회하였데,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을 그냥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서해주었으나,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E이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회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망치와 칼을 가지고 와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 등 단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며,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한전력은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사 곽윤경